

[사 건 명] 행심 2014-13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07.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20시간 등』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2014. 6.26. 10:40경 청구인은 영어실로 이동하려고 줄을 서는 도중 길을 비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청구 외 ○○○과 □□□ 학생의 복부를 폭행하였다.
- 나. 2014. 7. 1. 피해자 측의 학교폭력신고로 같은 날 청구인의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안내하였다.
- 다. 상기의 사실로 2014. 7.10.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에서는 2014. 7.11. 학교폭력의 가해자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특별교육 20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10시간』의 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8.22.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고 한다)의 결과통지서에 학교폭력신고의 발생이유나 발생시점에 대하여 ‘○○○은 2014.6.26. 10:40경 영어실로 이동하려고 줄을 서는 도중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 및 □□□ 학생의 복부를 폭행하였다.’라고 적시하였으나, 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2014.6.26. 3교시 후 발생한 학교폭력이라고 하고 있고, 다시 2014.6.26. 11:20경이라고 정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의 보건실 처치 기록에 11:02분이라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말한 사건 발생시점과 맞지 않으며, 이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특정한 시점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특별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받게 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피해사실에서 ‘□□□ 측이 배를 발로 맞은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 접수’했다고 하고 있는 등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사건발생의 이유나 장소, 그리고 시점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이라고 한다) 제17조제5항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있으면 자치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측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전에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자치위원회 일정도 자치위원회 개최 하루 이틀 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고서야 알게 될 정도로 가해자 측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열렸고,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해자의 의견은 거의 삭제되고 반영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의 부모님은 참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위원회가 열리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 피청구인은 학교폭력 신고자를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 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이 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또한 피청구인이 사안 본질을 이해하고 자체의 경중을 파악하기 보다는 일단 자치위원회를 열어 조치만 내리면 된다는 생각에 신고자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이 사건의 피해자는 ○○○, □□□ 학생인데, 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외 다른 사건을 거론하면서 5호 조치를 짜 맞추기 위한 회의를 했고, 또래 보다 어리고 어울리지 못하고 학습적으로 떨어지고 표현도 못하면,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이지, 외부 상담과 진단을 강요하고 이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 종결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자치위원회를 이용하여 내린 조치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학교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학생 현재 상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5호 조치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청구인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로서 처벌이나 제재에 우선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모,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받을 대상임에도 그러한 노력은 전혀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채 어린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몰아 처벌만 능사로 아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으며, 더욱이 학폭법에서의 심각성은 가해학생의 현재 상태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심각성 혹은 현재 발생 사건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의 현재 상태의 심각성을 조치의 이유로 들고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할 것이고, 이처럼 학폭법의 이해 부족과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위법 부당한 조치를 내린 것이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 발생은 2014. 6.26. 3교시 영어실에서 교실로 이동하려던 도중 일어난 것이고, 영어시간은 3교시였으므로 11시 20분경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발생 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그 이후에 조사한 모든 일체의 내용을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고, 실제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지 않고 회의록과 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사안과 조치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이다.
- 나.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신고가 최초 인지된 2014. 7. 1. 청구인의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유선으로 안내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직접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치위원회 개최는 2014. 7. 3. 유선 상으로 안내하고 이후 등기로도 발송하였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또한, 회의록에 청구인의 학부모 의견이 일부 삭제된 부분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진술로 불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삭제한 것이고, 피해자 측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은 이미 학교에 와 진술을 완료하였고, 학부모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식적인 자치위원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아울러 회의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자치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피해학생과 같은 반 친구들이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자주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불안하며 무섭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가해자의 폭력수준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고, 이는 담임교사의 상담기록부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자를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학교 측에서 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며, 가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이 그 날 누구를 때렸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가해 학생의 상황판단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다른 많은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라. 자치위원회가 열린 것은 피해학생 학부모 두 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열린 것이고,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내려진 5호 조치는 학생 현재 상태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3월부터 피해학생 및 다른 친구들에게 이어져왔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인 것이다.
- 마. 청구인은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최초 ◇◇초에서 ㉠㉠초, ㉡㉡초, ㉢㉢초) 전학을 다녔던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청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의 학부모님께서서는 청구인의 결석일이 30일이 넘을 정도로 학교에 자주 등교시키지 않았다. 학교에서 외부상담과 진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과 진단을 받아보기를 권유했던 것이고, 5호 조치는 자치위원들이 장기적인 상담을 통해 청구인 및 학부모를 돕기 위해 결정한 조치인 것이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학생이 상담을 통해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이사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7조, 제22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2014. 6. 26. 11:20경 3교시 영어수업이 끝나고 영어실에서 교실로 이동하려던 도중에 청구인은 피해학생 ○○○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학생 ○○○이 얼른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통으로 찌르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복부 등을 폭행하였다. 피해 학생 □□□의 어머니는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복부를 발로 맞았다고 신고하였으나, 피해학생 □□□의 자술서 기재내용과 상이하고, 달리 피해학생 □□□도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복부를 폭행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신고가 최초 인지된 2014. 7. 1. 청구인의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유선으로 안내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직접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치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2014. 7. 3. 유선 상으로 안내하고 이후 2014. 7. 8. 등기우편으로 발송 고지하였다.

- 3) 2014. 7.10. 15:30 피해학생 □□□의 부모 및 청구인은 참석하였으나, 피해학생 ○○○의 부모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위원회가 열렸고, 회의록에 청구인의 학부모 의견이 일부 삭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 4) 청구인은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최초 ◇◇초에서 ㉠㉠초, ○○○초, ○○○초) 전학을 다녔던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청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의 학부모님께서서는 청구인의 결석일이 30일이 넘을 정도로 학교에 자주 등교시키지 않았다.
- 5) 담임 박상훈의 생활지도 및 상담기록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반 친구들이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을 자주 당하거나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극도로 불안해하며, 불안정한 교실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의 폭력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고 무관심하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6)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피해학생 ○○○에 대한 폭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도 청구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학생과의 화해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사건발생의 이유나 장소, 그리고 시점에 관하여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피청구인의 잘못은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며, 학폭법 제17조제5항에서 ‘학교폭력신고가 있으면 자치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측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전에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자치위원회 일정도 자치위원회 개최 하루 이틀 전 통보함으로써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또한 학교 폭력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고서야 알게 될 정도로 가해자 측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열렸으며,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해자의 의견은 거의 삭제되고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의 부모님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위원회가 열리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는 피해학생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어서 폭력행위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표현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은 자술서에서 폭행이 발생한 시점이나 폭행의 태양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이 특정한 시점 및 폭행의 방법이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해학생 □□□에 대한 폭행의 일시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학생 ○○○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는 마당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피청구인이 사전통지 및 유선,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각 가해사실 및 회의 개최일시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학교폭력 신고인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치위원회에 피해학생의 부모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회의록에서 청구인의 진술 기록이 일부 삭제된 사실 등은 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결정 절차에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도 결여된 담임종결 사안으로 처리하여야 할 정도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폭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특별교육 20시간(보호자 특별교육 10시간)의 조치를 함은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중하여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겪을 청구인의 고통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하게 일탈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학폭법의 입법 취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습권 보다는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나, 피해학생이 이 사건 폭행 외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과 같은 반 학생들이 청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실생활을 힘들어 하고 청구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사실이 피해학생의 자술서와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및 상담기록부 기재내용을 통해 인정되는 등 피해학생은 물론 신고 되지 않은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어머니 역시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해서 청구인이 입는 피해의 보호 보다는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과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연령이나 폭력의 방법, 피해의 정도, 학교폭력을 대하는 보호자의 태도,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 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